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 | |
|---|--------|
| 선 | 기관 의 장 |
| 람 | |

제1566호 2020. 12. 21(월)

차 례

조 례

| | | |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23호 |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24호 |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25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26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0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27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11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2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13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29호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6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30호 |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 22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31호 |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30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32호 |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33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33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 36 |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5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35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5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36호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 6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3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6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38호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7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39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8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4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8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4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9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42호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 105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 112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6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 - 120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64호 인천광역시 서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폐지 규정 - 139

예 규

- 인천광역시서구 예규 제1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처리 신고·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지침 -- 140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1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14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2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50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결과 공고 ---- 15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64호 분묘개장공고(1차) ----- 15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
법예고 ----- 15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97호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8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23호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 환경안전국장, 경제교통국장, 미래도시국장, 보건소장”을 “환경안전국장, 미래도시국장,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서구청 및 공단이 실시하는 주민참여위원회, 사업별 운영위원회 등 주민참여제도에 참여한 경우 공단 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이용 편의 등 특전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사규정, 전문직 및 현업직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보수(연봉, 복리후생 포함) 및 명예(조기)퇴직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폐지가 요구되거나 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그와 관련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장(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를 삭제한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7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정한다.

③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제안 등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의 제목 “참여예산 주민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주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0명”을 “100명”으로, “6”을 “8”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담당”을 “주민참여 예산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위원회의 위원은”으로, “각 동별 1명으로 하고, 제2호의 사람을 합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를 “위원 총수의 1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각 동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모집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동별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구성에서 청년,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14조의 제목 “(주민위원회 운영원칙)”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주민위원회”를 각각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주민위원회를 대표하고, 주민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민 및 지역회의”를 “주민제안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주민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위원회를”을 “주민제안사업”로, 같은 항 및 제4항 중 “주민위원회”를 각각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주민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개”를 “8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각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부서 주무 담당으로 한다”를 “분과별 제안사업 주요부서 주무담당으로 구청장이 지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⑨ 청년,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 청소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 등 세부 운영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9조 중 “주민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중 “주민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역위원회와”를 삭제하고, “주민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업무”를 “주민참여예산업무”로, 같은 항 및 제4항 중 “주민위원회”를 각각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같은 항 중 “예산업무”를 “주민참여예산업무”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주민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지역주민들”을 “주민제안사업”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주민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예산업무”를 “주민참여예산업무”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운영방안 지원”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구”를 “제안”으로 한다.

제31조는 삭제한다.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예산학교는 상설운영하고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 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위원회, 협의회 활동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강사료 지급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기존 조례에 따른 주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조례의 개정 및 위촉기간의 만료 등에도 불구하고 민관협의회 구성원이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 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이하 “충전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충전기 설치 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해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이동 편의를 고려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 공원, 휴게공간 등 설치 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전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인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련활동”을 “활동”으로, “육성지원”을 “성장지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시설”로 한다.

제2조 중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청소년시설”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육성”을 “성장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련시설”

이란”을 ““청소년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으로, “수련활동”을 “활동”으로, “갖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를 “갖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육성”을 “성장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심신수련”을 “심신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련활동”을 “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도”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수련시설의 사용 등)”을 “(시설의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수련시설”을 각각 “시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수련시설 사용허가)”를 “(시설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수련시설”을 각각 “시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10조의2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련시설”을 각각 “시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 명 칭 | 위 치 | 비 고 |
|---------|--------------------------|---------------------------|
| 서구청소년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92(원창동)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해당 |
| 연희청소년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64(심곡동)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에 해당 |
| 가좌청소년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7번길 12(가좌동) | |
| 검단청소년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88번길 3(마전동) | |

※ 청소년 시설 운영 특성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2】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서구 청소년센터에 한정한다)

(단위 : 원)

| 시 설 명 | 구분 | 오전 (09:00-13:00) | 오후 (13:00-18:00) | 야간 (18:00-22:00) | 비 고 |
|-------|--------|---------------------|---------------------|---------------------|-------|
| 공 연 장 | 공연(영화) | 30,000 | 45,000 | 70,000 | |
| | 행 사 | 45,000 | 65,000 | 90,000 | |
| 강의실 등 | 교 육 | 시간당 10,000원 | | 시간당 12,000 | 1실 기준 |

【 비 고 】

1. 공연장은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2. 공연장은 시설사용 허가 시 사용자가 사용시간(오전, 오후, 야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3.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 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시간이 2시간 이상은 다음 회 사용료의 100%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면 다음 회의 50%를, 1시간 미만이면 다음 회의 30%를 추가 징수한다. 또한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15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부속설비 사용료(서구 청소년센터에 한정한다)

(단위 : 원)

| 부속설비 | | 구분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
| 피 | 아 | 노 | 1회 공연 | 30,000 |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
| 무대시설 | 공 | 바 | 톤 | 1회 1개 | |
| 무대음향 | 마이크 | | 기본 3개 추가 1개당 | 10,000 3,000 |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 | 특수마이크 | PIN | 1일 1개 | 30,000 | |
| | | W/L | 1일 1개 | 20,000 | |
| | M R (A R , B G M) | | 1시간 | 10,000 | |
| L C D 프 로젝트 | | 1회 공연 | 20,000 | | |
| 무대조명 | 조 명 | | 1시간 | 20,000 | ○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 | 특수효과기 | 포그머신 (액별도) | 1회 공연 1대 | 20,000 | |
| | | 드라이아이스 (액별도) | 1회 공연 1대 | 10,000 | |
| 냉난방 | ○ 계절에 따른 봄·가을철, 여름철, 겨울철로 구분하여 시설별 시간당 냉난방기 소비전력,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등에 10%를 가산하여 시간당 사용료를 산출함 ※ 봄·가을철(3월~5월, 9월~10월), 여름철(6월~8월), 겨울철(11월~다음해 2월말) ○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냉방(6월~8월) 및 난방(11월~2월말) 해당기간에는 냉·난방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온급변 시 사용자와 협의조정 가능함) | | | |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 비 고 】

1. 피아노, 무대시설, 무대음향, 무대조명 중 공연(행사) 준비 및 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2. 1시간 단위로 부과하는 무대음향, 무대조명, 냉난방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 초과시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3. 부속설비(무대시설,대·소도구 등 시설 내 물품 일체) 사용 중 파손 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음.

3. 수영장 사용료(서구 청소년센터에 한정한다)

(단위 : 원)

| 구 분 | 기 준 | 금 액 | | | 비 고 |
|----------------|-----|--------|--------|--------|-------------------------|
| | | 성 인 | 중·고등학생 | 초등학생이하 | |
| 강습회원 (월 이용) | 개 인 | 52,000 | 44,000 | 38,000 | 1일 1회만 출입하는 기준금액임 |
| 자유회원 (월 이용) | 개 인 | 42,000 | 33,000 | 28,000 | |
| 1일 이용 | 개 인 | 5,000 | 3,000 | 2,000 | |
| | 단 체 | 4,000 | 2,500 | 1,500 | |

【 비 고 】

1. 단체란 **동일소속**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인솔되어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2. 강습회원(월 이용)이란 수영프로그램을 1개월 단위로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유회원(월 이용)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고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 사용료 월5,000원,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4. 교육수강료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30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하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4.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상쇄되어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보전,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자신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후변화시책의 수립 및 수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기후변화시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한다.

⑤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기후변화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기후변화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7조(학교·시민단체·공공기관 등의 책무) 학교·시민단체·공공기관 등은 주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억제 실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후변화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2.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3. 그 밖에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점검)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매년 이행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에서 추진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업 또는 추가된 사업에 대한 조치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시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 소속의 국장과 기후변화 관련 부서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 부족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1명
2. 기후변화 대응분야 전문가
3. 그 밖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함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기후변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탄소포인트제도 등) ① 주민들은 저탄소·친환경 행동을 생활화하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의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고 있

는 탄소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 및 건의
2. 기후변화대응 전문가 육성 및 홍보·교육
3.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19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사업자·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사항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실천사업 참가자 장려시책(행정·재정 등의 보상) 사업
3.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사업
4.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고효율 에너지 자재 교체사업
6.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7. 효율적인 기후변화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재 및 자료 등을 위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포상)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체계 확립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있는 주민·시민단체·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31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은 재난 안전 및 성인지 감수성 내용을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임기를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 및 부대표로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위촉해제)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위촉 해제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소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32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7조에 따라”를 “제27조제2항에서 위임한”으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공작물”을 각각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호 중 “신체장애인용”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및”을 “· 광역시도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행자 전용도로”란”을 ““보행자전용도로”란”으로 하고, “공작물”을 “인공 구조물”로 한다.

제3조 중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순(順)”을 “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오전 11시까지
 -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에는 즉시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방지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에는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중 “비치하여”를 “갖춰 두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 편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 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의 제목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을 “(대책본부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대책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수습”으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유관기관”을 “유관 기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대책본부 편성기준)”을 “(대책본부 운영체제 및 실무반 편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책본부의”를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경계, 1, 2~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나. 사회재난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라. 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8과 같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제3조제3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제6항”을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대책본부회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제6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20조)제3항제4호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
| 가. 상황관리 총괄반 | 1)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주요인사 주재 회의 등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 | 2) 상황보고서 작성 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 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 |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팀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

| | | |
|---------|----------------|---|
| | |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
| | |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
| | 4) 행정지원팀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관리 |
| 나.협업기능반 | 1) 긴급 생활 안정지원반 |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 |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각 부서, 유관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복구현황 파악 |
| | 3) 긴급통신지원반 |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유관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복구현황 파악 |
| |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유관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응급복구현황 파악 |
| | 5) 에너지공급 |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 |

| | |
|---------------------------------|---|
| <p>피해시설 기능복구반</p> | <p>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유관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복구현황 파악</p> |
| <p>6) 재난수습 홍보반</p> | <p>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군·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p> |
| <p>7)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p> | <p>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 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p> |
| <p>8) 교통대책반</p> | <p>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p> |
| <p>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p> | <p>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p> |

| | | |
|--------------------------|---|---|
| | | <p>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p> <p>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p> |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p>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p> <p>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p> <p>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p> <p>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p> | |
| 11) 사회질서 유지반 | <p>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p> <p>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p> <p>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p> <p>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p> <p>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p> | |
| 12) 수색·구조 구급반 | <p>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p> <p>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p> <p>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p> <p>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p> <p>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p> | |
|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 | <p>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p> |

2. 사회재난의 경우

| 구 분 | | 업무와 역할 |
|----------------------|--------------------|--|
| 가. 재난상황 총괄반 | 1) 상황관리 총괄팀 |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 | 2) 수습상황 파악팀 |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현장통합지원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 나. 협업기능반 |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
| |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
| | 3) 긴급통신지원반 | |
| |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
| | 5) 에너지공급과해시설 가능복구반 | |
| | 6) 재난수습홍보반 | |
| |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
| | 8) 교통대책반 | |
| | 9)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
|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
| | 11) 사회질서 유지반 | |
| | 12) 수색, 구조·구급반 | |
|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 |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서구 주관부서 |
|--------------|--|-------------------------|
| 1. 교육부 |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교육혁신과 |
| 2. 미래창조과학부 |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홍보정책과 기획예산실 |
| 3. 외교부 |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안전총괄과 |
| 4. 법무부 |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안전총괄과 |
| 5. 국방부 |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안전총괄과 |
| 6. 행정안전부 |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 안전총괄과 |
| 7. 문화체육관광부 |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문화관광체육과 |
| 8. 농림축산식품부 |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 경제에너지과 |
| 9. 산업통상자원부 | 1.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나. 원유 수급 사고 3. 다. 원자력안전 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4. 라. 전력 사고 5.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소관부서 (경제에너지과 등) |
| 10. 보건복지부 |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 보건행정과 |
| 11. 환경부 | 6.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7.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8.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9.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10. 마. 황사 | 환경관리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
| 12. 고용노동부 | 11.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안전총괄과 |
| 13. 국토교통부 |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 도시기반과 |

| | | |
|--------------|--|--|
| | <p>나. 고속철도 사고</p> <p>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p> <p>라. 도로터널 사고</p> <p>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p> <p>바. 육상화물운송 사고</p> <p>사. 지하철 사고</p> <p>아. 항공기 사고</p> <p>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p> <p>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p> | <p>교통정책과</p> <p>안전총괄과</p> <p>도시기반과</p> <p>생태하천과</p> <p>교통정책과</p> <p>교통정책과</p> <p>안전총괄과</p> <p>안전총괄과</p> <p>건축과</p> |
| 14. 해양수산부 | <p>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p> <p>나. 조수(潮水)</p> <p>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p> <p>라. 해양 선박 사고</p> | <p>경제에너지과</p> <p>생태하천과</p> |
| 15. 행정안전부 | <p>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p> <p>나. 화재·위험물 사고</p> <p>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p> <p>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p> <p>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p> | <p>도시기반과</p> <p>소관부서 (안전총괄과 등)</p> <p>문화관광체육과</p> <p>소관부서 (안전총괄과 등)</p> <p>안전총괄과</p> |
| 16. 금융위원회 | <p>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p> | <p>경제에너지과</p> |
| 17. 원자력안전위원회 | <p>가. 원자력안전 사고</p> <p>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p> | <p>안전총괄과</p> |
| 18. 문화재청 | <p>가. 문화재 시설 사고</p> | <p>문화관광체육과</p> |
| 19. 산림청 | <p>가. 산불</p> <p>나. 산사태</p> | <p>공원녹지과</p>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4]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 | |
|-------|--|
| 차 장 | 부구청장 |
| 총괄조정관 | 환경안전국장 |
| 통 제 관 | 재난수습 관련 부서 각 국장 |
| 담 당 관 | 재난수습부서장 |
| 실 무 반 | 안전총괄과 공무원과 각 부서에서 파견된 인력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

- 비고: 1. 준비단계는 안전총괄과 소속 직원이 지역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안전총괄과는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자연재난 발생 시의 서구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경계단계

| | | | |
|----------------|-----------------|------------------------------|---|
| 본 부 장 | 구청장 | | |
| 차 장 | 부구청장 | | |
| 총괄조정관 | 환경안전국장 | | |
| 통 제 관 |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 | |
| 담 당 관 |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 | |
| 실 무 반 | 인 원 | 총 6+a명 | |
| | 반 장 |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 |
| | 1) 상황관리 총괄반 |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 · 재난 총괄부서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
| | 2) 협업기능반 (a)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 복지정책과 |
| | | 나) 재난현장환경장비반 | · 자원순환과 |
| | | 다) 긴급통신지원반 | · 기획예산실 |
| | | 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 도시기반과, 건축과, 생태하천과, 공원녹지과, · 환경관리과, 경제에너지과, 문화관광체육과 |
| | | 마)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 경제에너지과 |
| |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 홍보정책과 |
| | | 사) 재난관리자원지원반 | · 안전총괄과 |
| | | 아) 교통대책반 | · 교통정책과 |
| |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 |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 총무과 |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 서부경찰서 (안전총괄과) | | |
|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 서부소방서 (안전총괄과) | |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비상1단계

| | | | | |
|-------|----------------|------------------------------|--|--|
| 본 부 장 | 구청장 | | | |
| 차 장 | 부구청장 | | | |
| 총괄조정관 | 환경안전국장 | | | |
| 통 제 관 |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 | | |
| 담 당 관 |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 | | |
| 실 무 반 | 인 원 | 총 13+a+β명 | | |
| | 반 장 | 안전총괄과장 | | |
| | 1)상황관리 총괄반 | 가)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 | · 재난 총괄부서 3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
| |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 재난 총괄부서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
| | |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 재난 총괄부서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
| | | 라) 행정지원팀 | · 총무과 | |
| | 2)협업기능반 (a)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 복지정책과 | |
| | | 나) 재난현장 환경장비반 | · 자원순환과 | |
| |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 기획예산실 | |
| | | 라) 시설파해 응급복구반 | · 도시기반과, 건축과, 생태하천과, 공원녹지과, 환경관리과, 경제에너지과, 문화관광체육과 | |
| | | 마) 에너지 공급 파해시설 기능복구반 | · 경제에너지과 | |
| |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 홍보정책과 | |
| |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 안전총괄과 | |
| | | 아) 교통 대책 반 | · 교통정책과 | |
| |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
| |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 총무과 | |
| |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 서부경찰서 (안전총괄과) | |
| | |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 서부소방서 (안전총괄과) | |
|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 ·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서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3단계

| | | | | |
|----------------|----------------|---------------------------|---|--|
| 본 부 장 | 구청장 | | | |
| 차 장 | 부구청장 | | | |
| 총괄조정관 | 환경안전국장 | | | |
| 통 제 관 |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 | | |
| 담 당 관 |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 | | |
| 실 무 반 | 인 원 | 총 18+a+β명 | | |
| | 반 장 | 안전총괄과장 | | |
| | 1)상황관리 총괄반 | 가) 재난정보수집분석및 전과, 재난상황 관리팀 | ·재난 총괄부서 3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 |
| | | 나)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총괄부서 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
| | |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5명 | |
| | | 라) 행정지원팀 | ·총무과 | |
| | 2)협업기능반 (a)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 |
| |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 |
| |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기획예산실 | |
| | | 라) 시설해응급복구반 | ·도시기반과, 건축과, 생태하천과, 공원녹지과, 환경관리과, 경제에너지과, 문화관광체육과 | |
| | | 마) 예치공급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에너지과 | |
| |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정책과 | |
| |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 |
| | |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 |
| | | 자) 의료·방역서 비스지원반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
| |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과 | |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 ·서부경찰서 (안전총괄과) | | |
|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서부소방서 (안전총괄과) | | | |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서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6]

사회재난 발생시의 서구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 | | | |
|-------------|--------------|----------------------|--|
| 본 부 장 | 구청장 | | |
| 차 장 | 부구청장 | | |
| 총괄조정관 | 환경안전국장 | | |
| 통 제 관 |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 | |
| 담 당 관 |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 | |
| 실 무 반 | 인 원 | 총 10+α+β+γ명 | |
| | 반 장 | 안전총괄과장 | |
| | 1)재난상황 총괄반 | 가) 상황관리총괄팀 | · 재난 총괄부서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 | | 나) 수습상황과악팀 | · 재난 총괄부서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
| | 2)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 복지정책과 |
| | | 나) 재난현장환경장비반 | · 자원순환과 |
| | | 다) 긴급통신지원반 | · 기획예산실 |
| | | 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 도시기반과, 건축과, 생태하천과, 공원녹지과, 환경관리과, 경제에너지과, 문화관광체육과 |
| | | 마) 에너지공급피해설 기능복구반 | · 경제에너지과 |
| |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 홍보정책과 |
| |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 안전총괄과 |
| | | 아) 교통대책반 | · 교통정책과 |
| |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 |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 총무과 |
| |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 서부경찰서 (안전총괄과) |
| 타) 수색 구조구급반 | | · 서부소방서 (안전총괄과) | |
| 재난대응협업반(β) | | ·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
| 현장지원반(γ) | | ·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 |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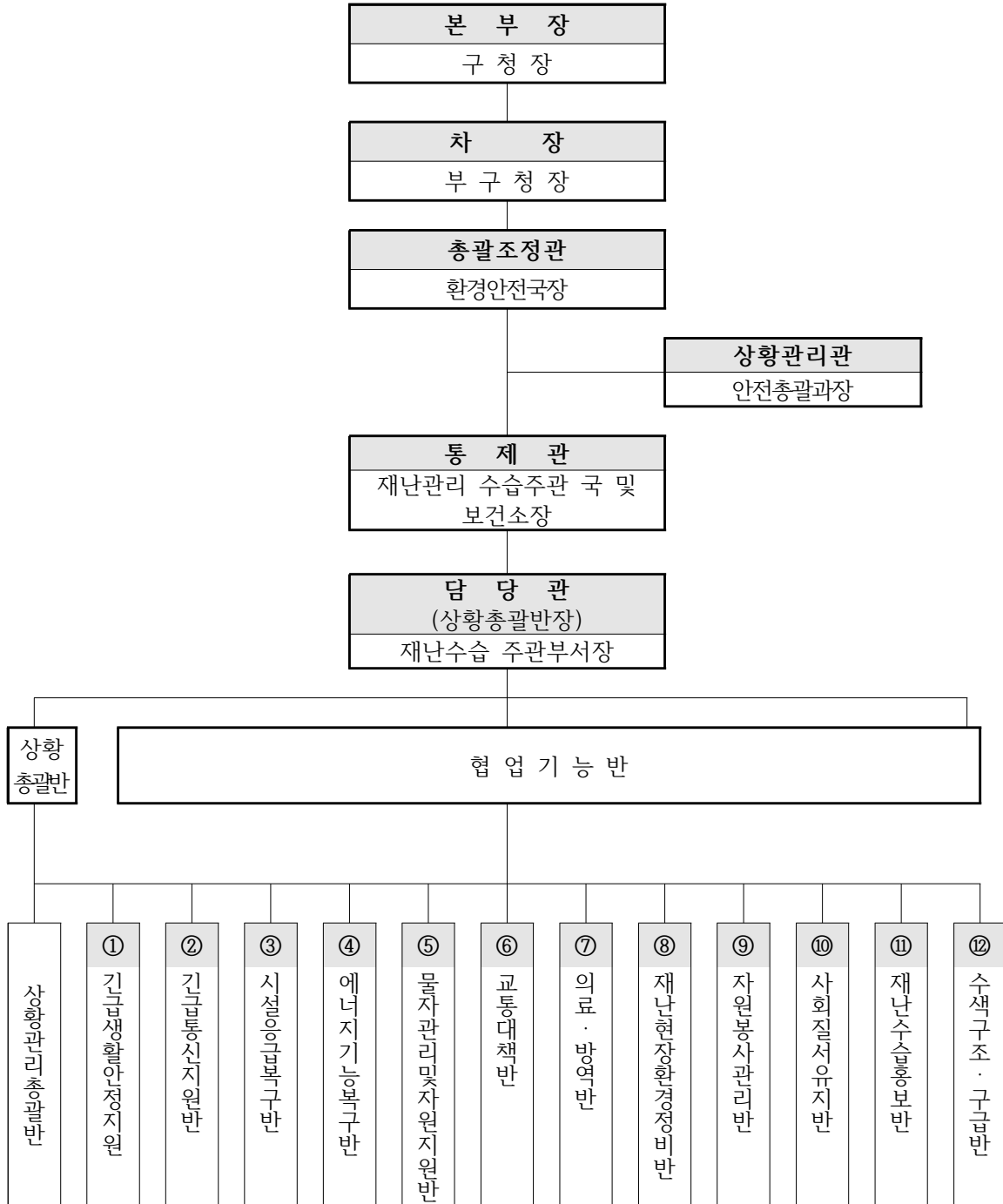
[별표 7]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5 및 별표 6 관련)

| 구분 | | 비상단계 기준 | |
|---------|--|------------|---|
| 1. 자연재난 | 풍수해 (태풍·호우·대설)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 1) 경계 단계 |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로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상황판단회의 결과 서구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 | | 2) 비상 1 단계 |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로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상황판단회의 결과 서구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 | | 3)비상2~3 단계 |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로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2. 사회재난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르는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서구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 |

[별표 8]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을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임명”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을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을 “임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을 “임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35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6조부터 제3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5장을 제6장으로, 종전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5장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시민추진단 설치) 구청장은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및 자원순환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7조(시민추진단의 구성) ① 구청장은 시민추진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5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지원자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구민
2. 자생단체,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3. 「서구 자원순환 정책 주민참여단」 참여위원 중 신청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라 모집된 인원이 많을 경우 시민추진단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인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권역별로 구성하며, 권역별 참여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3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1. 제1권역: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동(1~3동)
2. 제2권역: 석남동(1~3동), 신현원창동, 가좌동(1~4동), 가정동(1~3동)
3. 제3권역: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④ 시민추진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8조(시민추진단의 기능)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폐기물 감량, 선진화 및 재활용정책에 대한 주민 소통, 환경권, 주민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서구의 쓰레기 처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권고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 주민의 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시민추진단의 자문·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민추진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공동으로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서 호선된 위원이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① 시민추진단의 회의는 분기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추진단 회의를 소집하고, 사전에 협의하여 순서에 따라 교대로 회의를 주관한다.

③ 시민추진단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재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시민추진단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 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임기 중 사의를 표한 경우
2. 추진단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조(분과위원회) ① 시민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시민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3조(자문위원) 위원장은 시민추진단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폐기물·환경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기관, 단체,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및 정책 제안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조사·연구의뢰) ① 위원장은 시민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여론수렴) 시민추진단은 제28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유로운 형식의 토론회, 세미나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여론 수렴 및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제36조(수당 등) 참여위원 및 제33조에 따른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운영세칙) 시민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시민추진단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36호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마.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저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제1항의 우수업소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업소 지원)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과 홍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 시장, 소매업 등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3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에 따른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소비자·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마케팅·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도시개발·건축·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를(화상회의를 포함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38호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

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39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

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구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침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

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4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의 지정, 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주차장”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3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이 무료 또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을 소유한 자 또는 관리하는 자(소유자의 위임·동의 등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말한다. 제3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나 목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은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개방주차장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개방주차장의 지정 또는 개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과 개방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방주차장 소재지 및 개방기간에 관한 사항
2.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주차면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협약사항(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을 변경하거나 또는 개방기간 만료 이후 재개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개방주차장 지정 기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개방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개방하는 주차면(이하 “개방주차면”이라 한다)이 5면 이상일 것
2. 개방주차면을 하루 7시간, 주 5일, 2년 이상 계속 개방할 것
3.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개방하는 경우 개방주차면은 일반주차면과 구분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부설주차장의 진출입 구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하는 경우
 - 나. 차량의 교행이 곤란한 도로에 접하는 경우
2. 해당 지역의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주차가 원활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3.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어려운 외곽지역 또는 미개발지역인 경우
4. 부설주차장 위치, 시설의 구조·설비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방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보조·지원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개방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② 보조금의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개방주차장 지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 결정
2. 유료로 운영하는 개방주차장의 지정
3. 개방주차장 지정 우선순위 결정(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로 한정한다)
4. 개방주차장 미지정에 따른 이의신청(제2호는 제외한다)
5. 개방주차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개방주차 업무담당 국장과 주차, 교통,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주차, 교통,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 공무원
 3. 주차, 교통, 도시계획, 건축, 주택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간사는 개방주차장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제10조(관리 및 운영 등) ① 개방주차장은 소유자등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여 개방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유료 개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 3급지 요금의 범위에서 구와 소유자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방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와 이용자는 사용 약정을 체결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약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
2.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개방
3. 환승주차장으로 개방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개방주차장의 깨끗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 개방주차장의 청소관리 일부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입의 처리 등) ① 개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소유자등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범위에서 개방주차장 사용에 따른 보상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안내표지판 설치)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용안내표지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표지판 규격 등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직접 설치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 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규격 및 구조상 주차가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이용자 또는 관계자가 개방주차장이 속한 시설물(부지를 포함한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6.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차량의 이동조치 등) ① 관리자는 개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조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36조를 준용하며,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5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부설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② 유료 개방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와 개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개방 중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4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회화·

조각·공예·사진·서예 등), 환경시설물(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건립 신청) 건립주체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

조형물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 및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2. 작품성·독창성 및 예술성 구현
3.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인근 지역의 조망권 저해요인 여부

②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 공감도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4. 규격, 안정성 확보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 건립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그 밖에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위원은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 내부위원은 총괄부서장, 주관부서장 및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장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와 제척 등)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의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의와 실행심의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신청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 및 비치한다.
2. 공공조형물 등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

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하여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옮겨 설치하거나 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1. 사업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작자

6. 사업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 | | |
|----------------|--|------|--|
| 명 칭 | | 건설일자 | |
| 위 치 (공공시설명) | | 형 상 | |
| 구 조 | | | |
| 규 격 | | | |
| 건설주체 | | 관리기관 | |
| 건설취지 | | | |
| 인물 또는 사실 소개 | | | |

(뒤쪽)

동상 · 기념비 · 조형물의 위치(배치)도

동상 · 기념비 · 조형물의 전면사진 (5" × 7")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42호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국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국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국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국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소재 기관에서 혈장 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구청장의 감사 서한을 발송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혈 참가 및 헌혈 직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⑥ 관내에서 헌혈 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⑦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헌혈관련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7.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서부지원교육청, 인천서부경찰서, 관내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지역 언론기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관련 단체의 기관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구의회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④ 협의회는 별도로 제7조제2항의 실무 추진을 위해 구성기관 실무 부서장 위주의 헌혈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사망·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10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인
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
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를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련시설의 적정”을 “시설의 적절”로 한다.

제4조 중 “반환받고자”를 “돌려받고자”로 한다.

제5조 중 “납입”을 “납부”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내·외부”를 “내부와 외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를 “(위탁운영 신청 및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지계산서”를 “수입·지출 계산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청소년육성”을 “청소년 성장지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련시설”을 각각 “시설”로, 같은 항 중 “다음해”를 “다음 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청소년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 | | | | |
|---|--------------------|-----------------|-------|-------|
| 시 설 명 | | | | |
| 신 청 인 | 주 소 | | | |
| |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 | 생년월일 | |
| | 단 체 명 | | 전 화 | |
| 내 | 사용시설명 | | | |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사 용 목 적 | | | |
| | 사 용 인 원 |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 | |
| | 성 별 현 황 | 명 (남자 명, 여자 명) | | |
| | 사 용 료 구 분 | [일 반] | [감 면] | |
| 용 | 변경신청내용 | | | |
| | 변경신청기간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변경신청사유 | | | |
| | 사 용 요 금 | | | |
| | 첨 부 | 행사계획서 1부 | | |
| <p>「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귀하</p> | | | | |
|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 | | | |

(뒷면)

이 용 자 준 수 사 항

1.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7. 시설사용 승낙 후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고하여야 합니다.
 8. 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사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소년시설 사용을 취소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 청소년시설 사용 취하원 | | | |
|--|--------------------|-----------------|-------|
| 시 설 명 | | | |
| 신 청 인 | 주 소 | | |
| |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 생년월일 | |
| | 단 체 명 | 전 화 | |
| 내 용 | 사용시설명 | | |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사 용 목 적 | | |
| | 사 용 인 원 |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 |
| | 사 용 료 구 분 | [일 반] | [감 면] |
| | 취 하 시 설 명 | | |
| | 취 하 신 청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취 하 사 유 | | |
| | 납부한 사용료 | | |
| 첨 부 | 증빙자료 1부 | | |
| <p>「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취하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 | |
| ※ 취하원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 제5호서식】

| 청소년시설 위탁(수탁) 운영 신청서 | | | |
|---|---------------------------|----------------|--|
| 시 설 명 | | | |
| 신청자 | 법인(단체)명 | | |
| | 주 소 | 법인(단체) 등록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법인(단체)설립근거 | | 설립일자 | |
| 재 산 | 계 : 백만원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 | |
| 위탁운영관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위탁관리목적 | 위탁운영면적 | | |
| 세부운영계획 | 별지작성 | | |
| <p>「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주 소 :</p> <p style="text-align: center;">법인(단체)명 :</p> <p style="text-align: center;">대 표 자 : (인)</p> <p>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 | | |
| <p>※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 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 간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등 | | |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6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 원 | 직 급 별 내 역 |
|------------|-----|--|--------------|---|
| 합 계 | | | 1,292 | |
| | 정무직 | 소계 | 1 | |
| | 일반직 | 소계 | 1,287 | |
| | | 2급 | 1 | 행정 1 |
| | | 4급 | 8 | 행정 2, 기술 2, 행정·기술 4 |
| | | 5급 | 71 | 행정 12, 의무 2, 운전 1, 행정·사회복지 5, 행정·공업 2, 행정·녹지 1,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1,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3, 행정·사회복지·보건 3, 행정·사회복지·환경 2,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3, 행정·공업·시설 1, 행정·녹지·시설 2, 행정·보건·환경 2, 행정·보건·시설 1, 행정·환경·시설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
| | | 6급 | 304 | 행정 88, 세무 18, 전산 1, 사회복지 18, 속기 2, 공업 8, 농업 1, 녹지 6, 수의 1, 보건 6, 의료기술 2, 간호 1, 환경 6, 시설 23, 방송통신 1, 운전 5,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2, 행정·세무 12, 행정·사회복지 39, 행정·공업 2, 행정·농업 1, 행정·녹지 2, 행정·보건 5, 행정·환경 6, 행정·시설 11, 행정·방송통신 4, 사회복지·간호 1, 공업·환경 1, 녹지·시설 1, 보건·간호 1, 보건·환경 1, 식품위생·간호 1, 의료기술·간호 3, 환경·시설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세무·공업 1, 행정·세무·농업 1, 행정·세무·방송통신 1, 행정·공업·시설 2, 행정·보건·간호 2,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보건·의료기술·간호 8,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
| | | 7급 | 375 | 행정 140, 세무 18, 전산 6, 사회복지 51, 공업 10, 농업 2, 녹지 8, 수의 1, 해양수산 1, 보건 17, 의료기술 4, 간호 8, 환경 13, 시설 54, 방재안전 1, 방송통신 2, 운전 15, 기계운영 1, 사무운영 4,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4, 행정·환경 1, 행정·시설 4, 농업·수의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3 |
| 8급 | 318 | 행정 118, 세무 9, 전산 1, 사회복지 60, 공업 7, 농업 1, 녹지 6, 보건 7, 의료기술 1, 간호 31, 환경 13, 시설 30, 방송통신 3, 운전 6,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전산 1, 행정·사회복지 7, 행정·간호 1, 행정·시설 4, 공업·보건 1, 공업·환경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보건·의료기술·간호 2 | | |

| 구 분 | 직 종 | 직급 | 정원 | 직 급 별 내 역 |
|-----|-----|-----|-----|--|
| | | 9급 | 210 | 행정 87, 세무 14, 사회복지 40, 공업 8, 농업 1, 녹지 5, 보건 3, 의료기술 2, 환경 15, 시설 20, 방재안전 2, 방송통신 3, 운전 3, 행정·사회복지 4,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
| | 별정직 | 계 | 3 | |
| | | 7급 | 1 | 일반비서 1 |
| | | 8급 | 2 | 일반비서 2 |
| | | 9급 | 0 | |
| | 연구직 | 계 | 1 | |
| | | 연구사 | 1 | 기록연구사 1 |

| 구 분 | 직 종 | 직급 | 정원 | 직 급 별 내 역 |
|-------|-----|----|---------|--|
| 구 분 청 | 계 | | 798 | |
| | 정무직 | 소계 | 1 | |
| | 일반직 | 소계 | 793 | |
| | | 2급 | 1 | 행정 1 |
| | | 4급 | 6 | 행정 1, 기술 1, 행정·기술 4 |
| | | 5급 | 39 | 행정 10, 운전 1, 행정·사회복지 5, 행정·공업 2,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1, 행정·공업·농업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
| | | 6급 | 211 | 행정 72, 세무 16, 전산 1, 사회복지 18, 공업 8, 농업 1, 녹지 5, 수의 1, 보건 5, 환경 6, 시설 21, 방송통신 1, 운전 2,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세무 9, 행정·사회복지 10, 행정·공업 2, 행정·녹지 1, 행정·보건 2, 행정·환경 4, 행정·시설 11, 행정·방송통신 3, 공업·환경 1, 녹지·시설 1, 보건·환경 1, 환경·시설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
| | | 7급 | 241 | 행정 83, 세무 18, 전산 6, 사회복지 27, 공업 8, 농업 1, 녹지 7, 수의 1, 해양수산 1, 보건 11, 환경 13, 시설 49, 방재안전 1, 방송통신 2, 운전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세무 2, 행정·사회복지 2, 행정·환경 1, 행정·시설 4, 농업·수의 1 |
| | | 8급 | 175 | 행정 70, 세무 9, 전산 1, 사회복지 23, 공업 7, 농업 1, 녹지 5, 보건 3, 환경 13, 시설 25, 방송통신 3,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전산 1, 행정·사회복지 6, 행정·시설 4, 공업·보건 1 |
| | | 9급 | 120 | 행정 42, 세무 13, 사회복지 5, 공업 8, 농업 1, 녹지 3, 보건 1, 환경 15, 시설 20, 방재안전 2, 방송통신 3, 행정·사회복지 4,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
| | 별정직 | 소계 | 3 | |
| | | 7급 | 1 | 일반비서 1 |
| | | 8급 | 2 | 일반비서 2 |
| | | 9급 | 0 | |
| 연구직 | 소계 | 1 | | |
| | 연구사 | 1 | 기록연구사 1 | |
| 의회사무국 | 일반직 | 소계 | 20 | |
| | | 4급 | 1 | 행정 1 |
| | | 5급 | 2 | 행정 2 |
| | | 6급 | 8 | 행정 4, 속기 2,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
| | | 7급 | 4 | 행정 4 |

| 구 분 | 직 종 | 직급 | 정원 | 직 급 별 내 역 |
|-------|-----|----|-----|---|
| | | 8급 | 4 | 행정 3, 운전 1 |
| | | 9급 | 1 | 행정 1 |
| 보 건 소 | 일반직 | 소계 | 111 | |
| | | 4급 | 1 | 기술 1 |
| | | 5급 | 7 | 의무 2, 행정·보건·의무·간호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
| | | 6급 | 23 | 행정 1, 보건 1, 의료기술 2, 간호 1, 사회복지·간호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간호 1, 의료기술·간호 3, 행정·보건·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8,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
| | | 7급 | 24 | 보건 5, 의료기술 4, 간호 8, 운전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3 |
| | | 8급 | 47 | 행정 2, 사회복지 2, 보건 2, 의료기술 1, 간호 31 , 운전 1, 행정·간호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보건·의료기술·간호 2 |
| | | 9급 | 9 | 행정 3, 사회복지 1, 보건 2, 의료기술 2, 운전 1 |
| 출 장 소 | 일반직 | 계 | 39 | |
| | | 5급 | 1 | 행정·공업·농업·시설 1 |
| | | 6급 | 11 | 행정 1, 세무 2, 녹지 1, 시설 2, 운전 1, 사무운영 1, 행정·농업 1, 행정·보건 1, 행정·공업·시설 1 |
| | | 7급 | 13 | 행정 2, 공업 2, 농업 1, 녹지 1, 보건 1, 시설 5, 행정·세무 1 |
| | | 8급 | 9 | 녹지 1, 보건 2, 시설 5, 공업·환경 1 |
| | | 9급 | 5 | 행정 2, 세무 1, 녹지 2 |
| 동 | 일반직 | 계 | 324 | |
| | | 5급 | 22 | 행정·녹지 1,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3, 행정·사회복지·보건 3, 행정·사회복지·환경 2,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2,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보건·시설 1 |
| | | 6급 | 51 | 행정 10 , 운전 1,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28 , 행정·녹지 1, 행정·보건 2, 행정·환경 2, 행정·방송통신 1, 행정·세무·공업 1, 행정·세무·농업 1, 행정·세무·방송통신 1 |
| | | 7급 | 93 | 행정 51 (행정복지 1), 사회복지 24 , 운전 13, 사무운영 3 행정·사회복지 2 |
| | | 8급 | 83 | 행정 43 (행정복지 5), 사회복지 35 , 운전 4, 행정·사회복지 1, |
| | | 9급 | 75 | 행정 39 (행정복지 3), 사회복지 34 , 운전 2 |

[별표 2]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 원 | 직 급 별 내 역 |
|----------------|-----|-----------|------------|-----------------------------------|
| 합 계 | | | 798 | |
| 감사담당관 | 일반직 | 소계 | 11 | |
| | | 5급 | 1 | 행정(개방형) 1 |
| | | 6급 | 4 | 행정 3, 사회복지 1 |
| | | 7급 | 6 | 행정 4, 시설 2 |
| 소통협력 담당관 | 일반직 | 소계 | 11 | |
| | | 5급 | 1 | 행정·시설 1(개방형) |
| | | 6급 | 3 | 행정 3 |
| | | 7급 | 5 | 행정 1, 전산 2, 사회복지 1, 시설 1 |
| | | 8급 | 1 | 행정·전산 1 |
| 기획예산 담당관 | 일반직 | 소계 | 28 | |
| | | 4급 | 1 | 행정·기술 1 |
| | | 5급 | 1 | 행정 1 |
| | | 6급 | 9 | 행정 6, 세무 1, 방송통신 1, 전화상담운영 1 |
| | | 7급 | 11 | 행정 11 |
| | | 8급 | 3 | 행정 1, 방송통신 1, 전화상담운영 1 |
| | | 9급 | 3 | 행정 1, 방송통신 2 |
| 미래기획단 | 일반직 | 소계 | 10 | |
| | | 5급 | 1 | 행정·시설 1(개방형) |
| | | 6급 | 3 | 시설 2, 행정·시설 1 |
| | | 7급 | 3 | 행정 1, 환경 1, 시설 1 |
| | | 8급 | 1 | 행정·시설 1 |
| | | 9급 | 2 | 시설 2 |
| 스마트에코 시티추진단 | 일반직 | 소계 | 14 | |
| | | 5급 | 1 | 행정·녹지·환경·시설 1 |
| | | 6급 | 4 | 행정 1, 행정·시설 1, 행정·방송통신 1, 환경·시설 1 |
| | | 7급 | 4 | 시설 3, 방송통신 1 |
| | | 9급 | 5 | 행정 1, 시설 3, 방송통신 1 |
| 홍보정책 | 일반직 | 소계 | 13 | |

| 구 분 | 직 종 | 직급 | 정원 | 직 급 별 내 역 | |
|------------------|----------------|-----|----|------------------------------|--------|
| 담 당 관 | | 5급 | 1 | 행정 1 | |
| | | 6급 | 2 | 행정 1, 전산 1 | |
| | | 7급 | 6 | 행정 2, 전산 4 | |
| | | 8급 | 3 | 행정 2, 전산 1 | |
| | | 9급 | 1 | 행정 1 | |
| 도 시 기 획 담 당 관 | 일반직 | 소계 | 22 | | |
| | | 5급 | 1 | 행정·시설 1 | |
| | | 6급 | 5 | 행정 1, 시설 1, 행정·시설 2, 녹지·시설 1 | |
| | | 7급 | 10 | 행정 3, 시설 7 | |
| | | 8급 | 4 | 행정 2, 시설 2 | |
| | | 9급 | 2 | 시설 2 | |
| 총 무 과 | 정무직 | 소계 | 1 | | |
| | | 일반직 | 소계 | 25 | |
| | | 2급 | 1 | 행정 1 | |
| | | 4급 | 1 | 행정 1 | |
| | | 5급 | 3 | 행정 1, 운전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 |
| | | 6급 | 7 | 행정 7 | |
| | | 7급 | 5 | 행정 4, 행정·시설 1 | |
| | | 8급 | 7 | 행정 7 | |
| | | 9급 | 1 | 행정 1 | |
| | | 별정직 | 소계 | 3 | |
| | | | 7급 | 1 | 일반비서 1 |
| | | | 8급 | 2 | 일반비서 2 |
| | 공 동 체 협 지 과 | 일반직 | 소계 | 15 | |
| 5급 | | | 1 | 행정 1 | |
| 6급 | | | 4 | 행정 4 | |
| 7급 | | | 3 | 행정 3 | |
| 8급 | | | 6 | 행정 6 | |
| 9급 | | | 1 | 행정 1 | |
| 재 무 과 | 일반직 | 소계 | 21 | | |
| | | 5급 | 1 | 행정·시설 1 | |

| 구 분 | 직 종 | 직급 | 정원 | 직 급 별 내 역 |
|-----------|-----|-----|----|---------------------------|
| | | 6급 | 6 | 행정 3, 운전 1, 시설 1, 기계운영 1 |
| | | 7급 | 8 | 행정 4, 시설 2, 운전 1, 행정·시설 1 |
| | | 8급 | 5 | 행정 4, 공업 1 |
| | | 9급 | 1 | 행정 1 |
| 세 무 1 과 | 일반직 | 소계 | 29 | |
| | | 5급 | 1 | 행정 1 |
| | | 6급 | 10 | 세무 6, 행정·세무 4 |
| | | 7급 | 10 | 세무 9, 행정·세무 1 |
| | | 8급 | 4 | 행정 1, 세무 3 |
| | | 9급 | 4 | 행정 2, 세무 2 |
| 세 무 2 과 | 일반직 | 소계 | 38 | |
| | | 5급 | 1 | 행정 1 |
| | | 6급 | 11 | 세무 8, 행정·세무 3 |
| | | 7급 | 9 | 세무 8, 행정·세무 1 |
| | | 8급 | 5 | 세무 5 |
| | | 9급 | 12 | 세무 11, 행정 1 |
| 민 원 봉 사 과 | | 계 | 23 | |
| | 일반직 | 소계 | 22 | |
| | | 5급 | 1 | 행정 1 |
| | | 6급 | 5 | 행정 5 |
| | | 7급 | 3 | 행정 3 |
| | | 8급 | 8 | 행정 7, 사무운영 1 |
| | | 9급 | 5 | 행정 5 |
| | 연구직 | 소계 | 1 | |
| | | 연구사 | 1 | 기록연구사 1 |
| 복 지 정 책 과 | 일반직 | 소계 | 37 | |
| | | 4급 | 1 | 행정·기술 1 |
| | | 5급 | 1 | 행정·사회복지 1 |
| | | 6급 | 7 |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3 |
| | | 7급 | 12 | 행정 3, 사회복지 8, 행정·사회복지 1 |
| | | 8급 | 12 | 행정 1, 사회복지 9, 행정·사회복지 2 |
| | | 9급 | 4 | 행정 3, 사회복지 1 |

| 구 분 | 직 종 | 직급 | 정원 | 직 급 별 내 역 |
|---------------|-----|----|----|---------------------------|
| 노인 복지 과 | 일반직 | 소계 | 15 | |
| | | 5급 | 1 | 행정 · 사회복지 1 |
| | | 6급 | 5 | 행정 1, 사회복지 2, 행정 · 사회복지 2 |
| | | 7급 | 5 | 행정 1, 사회복지 3, 행정 · 사회복지 1 |
| | | 8급 | 3 | 사회복지 3 |
| | | 9급 | 1 | 행정 1 |
| 장애인 복지 과 | 일반직 | 소계 | 20 | |
| | | 5급 | 1 | 행정 · 사회복지 1 |
| | | 6급 | 6 | 사회복지 4, 행정 · 사회복지 2 |
| | | 7급 | 5 | 사회복지 5 |
| | | 8급 | 3 | 사회복지 3 |
| | | 9급 | 5 | 사회복지 2, 행정 · 사회복지 3 |
| 교육 혁신 과 | 일반직 | 소계 | 20 | |
| | | 5급 | 1 | 행정 1 |
| | | 6급 | 5 | 행정 5 |
| | | 7급 | 7 | 행정 6, 사회복지 1 |
| | | 8급 | 3 | 행정 3 |
| | | 9급 | 4 | 행정 4 |
| 가정 보 육 과 | 일반직 | 소계 | 26 | |
| | | 5급 | 1 | 행정 · 사회복지 1 |
| | | 6급 | 7 | 행정 2, 사회복지 5 |
| | | 7급 | 7 | 행정 3, 사회복지 4 |
| | | 8급 | 8 | 행정 3, 사회복지 4, 행정 · 사회복지 1 |
| | | 9급 | 3 | 행정 2, 사회복지 1 |
| 아동 행복 과 | 일반직 | 소계 | 25 | |
| | | 5급 | 1 | 행정 · 사회복지 1 |
| | | 6급 | 5 | 행정 1, 사회복지 2, 행정 · 사회복지 2 |
| | | 7급 | 7 | 행정 2, 사회복지 4, 보건 1 |
| | | 8급 | 9 | 행정 2, 사회복지 4, 행정 · 사회복지 3 |
| | | 9급 | 3 | 행정 2, 행정 · 사회복지 1 |
| 문화 관광 체육 과 | 일반직 | 소계 | 18 | |
| | | 5급 | 1 | 행정 1 |

| 구 분 | 직 종 | 직급 | 정원 | 직 급 별 내 역 |
|-------|-----|----|----|---|
| | | 6급 | 5 | 행정 5 |
| | | 7급 | 5 | 행정 4, 행정·시설 1 |
| | | 8급 | 7 | 행정 6, 시설 1 |
| 클린도시과 | 일반직 | 소계 | 25 | |
| | | 4급 | 1 | 행정·기술 1 |
| | | 5급 | 1 | 행정·환경 1 |
| | | 6급 | 5 | 환경 3, 행정·환경 1, 공업·환경 1 |
| | | 7급 | 4 | 행정 1, 환경 3 |
| | | 8급 | 3 | 환경 3 |
| | | 9급 | 11 | 공업 3, 환경 8 |
| 환경관리과 | 일반직 | 소계 | 21 | |
| | | 5급 | 1 | 행정·환경 1 |
| | | 6급 | 3 | 환경 2, 행정·환경 1 |
| | | 7급 | 4 | 환경 4 |
| | | 8급 | 6 | 행정 1, 환경 5 |
| | | 9급 | 7 | 환경 5, 행정·환경 2 |
| 생태하천과 | 일반직 | 소계 | 21 | |
| | | 5급 | 1 | 행정·환경·시설 1 |
| | | 6급 | 7 | 행정 1, 공업 2, 시설 1, 운전 1, 보건·환경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
| | | 7급 | 8 | 행정 1, 공업 1, 환경 2, 시설 4 |
| | | 8급 | 2 | 보건 1, 시설 1 |
| | | 9급 | 3 | 행정 1, 공업 1, 시설 1 |
| 안전총괄과 | 일반직 | 소계 | 22 | |
| | | 5급 | 1 | 행정·시설 1 |
| | | 6급 | 7 | 행정 2, 행정·시설 2, 행정·방송통신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환경·시설 1 |
| | | 7급 | 6 | 행정 2, 환경 1, 시설 1, 방재안전 1, 방송통신 1 |
| | | 8급 | 4 | 공업 1, 시설 1, 방송통신 2 |
| | | 9급 | 4 | 행정 1, 시설 1, 방재안전 2 |
| 자원순환과 | 일반직 | 소계 | 31 | |
| | | 5급 | 1 | 행정·보건·환경 1 |
| | | 6급 | 8 | 행정 3, 공업 1, 행정·환경 2, 환경 1, 행정·보건·환경 1 |

| 구 분 | 직 종 | 직급 | 정원 | 직 급 별 내 역 |
|-----------------|-----|----|----|---|
| | | 7급 | 9 | 행정 5, 보건 1, 환경 2, 행정·환경 1 |
| | | 8급 | 7 | 행정 2, 환경 5 |
| | | 9급 | 6 | 행정 4, 환경 2 |
| 공 원 녹 지 과 | 일반직 | 소계 | 23 | |
| | | 5급 | 1 | 행정·녹지·시설 1 |
| | | 6급 | 7 | 녹지 5, 행정·녹지 1, 행정·방송통신 1 |
| | | 7급 | 7 | 녹지 7 |
| | | 8급 | 5 | 녹지 5 |
| | | 9급 | 3 | 녹지 3 |
| 위 생 과 | 일반직 | 소계 | 22 | |
| | | 5급 | 1 | 행정·보건 1 |
| | | 6급 | 7 | 보건 5, 행정·보건 2 |
| | | 7급 | 9 | 보건 9 |
| | | 8급 | 3 | 보건 2, 공업·보건 1 |
| | | 9급 | 2 | 보건 1, 행정·보건 1 |
| 경 제 에 너 지 과 | 일반직 | 소계 | 23 | |
| | | 4급 | 1 | 행정·기술 1 |
| | | 5급 | 1 | 행정·공업·농업 1 |
| | | 6급 | 6 | 행정 3, 공업 1, 농업 1, 수의 1 |
| | | 7급 | 11 | 행정 4, 공업 3, 농업 1, 수의 1, 해양수산 1, 농업·수의 1 |
| | | 8급 | 3 | 행정 1, 농업 1, 시설 1 |
| | | 9급 | 1 | 농업 1 |
| 기 업 지 원 일 자 리 과 | 일반직 | 소계 | 20 | |
| | | 5급 | 1 | 행정·공업 1 |
| | | 6급 | 7 | 행정 3, 공업 2, 행정·공업 1, 행정·공업·시설 1 |
| | | 7급 | 6 | 행정 3, 공업 1, 시설 1, 기계운영 1 |
| | | 8급 | 2 | 행정 1, 공업 1 |
| | | 9급 | 4 | 행정 2, 공업 2 |
| 교 통 정 책 과 | 일반직 | 소계 | 17 | |
| | | 5급 | 1 | 행정·공업·시설 1 |
| | | 6급 | 5 | 행정 3, 시설 1, 행정·공업 1 |
| | | 7급 | 4 | 행정 3, 공업 1 |

| 구 분 | 직 종 | 직급 | 정원 | 직 급 별 내 역 |
|-----------|-----|----|----|-----------------------------|
| | | 8급 | 5 | 행정 3, 공업 1, 시설 1 |
| | | 9급 | 2 | 행정 2 |
| 주 차 관 리 과 | 일반직 | 소계 | 14 | |
| | | 5급 | 1 | 행정·시설 1 |
| | | 6급 | 5 | 행정 3, 세무 1, 시설 1 |
| | | 7급 | 3 | 행정 1, 시설 1, 사무운영 1 |
| | | 8급 | 4 | 행정 4 |
| | | 9급 | 1 | 행정 1 |
| 차 량 민 원 과 | 일반직 | 소계 | 22 | |
| | | 5급 | 1 | 행정·공업 1 |
| | | 6급 | 4 | 행정 2, 행정·세무 2 |
| | | 7급 | 6 | 행정 4, 세무 1, 공업 1 |
| | | 8급 | 8 | 행정 7, 세무 1 |
| | | 9급 | 3 | 행정 2, 공업 1 |
| 도 시 기 반 과 | 일반직 | 소계 | 26 | |
| | | 4급 | 1 | 기술 1 |
| | | 5급 | 1 | 행정·시설 1 |
| | | 6급 | 7 | 행정 2, 공업 2, 시설 2, 행정·시설 1 |
| | | 7급 | 6 | 행정 2, 공업 1, 시설 3 |
| | | 8급 | 10 | 공업 1, 시설 6, 기계운영 1, 행정·시설 2 |
| | | 9급 | 1 | 공업 1 |
| 건 축 과 | 일반직 | 소계 | 25 | |
| | | 5급 | 1 | 행정·시설 1 |
| | | 6급 | 4 | 행정 1, 시설 3 |
| | | 7급 | 4 | 시설 4 |
| | | 8급 | 8 | 행정 1, 공업 2, 시설 5 |
| | | 9급 | 8 | 행정 1, 시설 7 |
| 주 택 과 | 일반직 | 소계 | 16 | |
| | | 5급 | 1 | 행정·시설 1 |
| | | 6급 | 4 | 시설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시설 1 |
| | | 7급 | 5 | 사회복지 1, 시설 4 |
| | | 8급 | 3 | 시설 2, 행정·시설 1 |

| 구 분 | 직 종 | 직급 | 정원 | 직 급 별 내 역 |
|-------|-----|----|----|-----------------------------|
| | | 9급 | 3 | 사회복지 1, 시설 2 |
| 도시재생과 | 일반직 | 소계 | 20 | |
| | | 5급 | 1 | 행정·시설 1 |
| | | 6급 | 6 | 행정 1, 시설 2, 사무운영 1, 행정·시설 2 |
| | | 7급 | 6 | 행정 1, 시설 5 |
| | | 8급 | 5 | 행정 2, 시설 3 |
| | | 9급 | 2 | 행정 1, 시설 1 |
| 토지정보과 | 일반직 | 소계 | 25 | |
| | | 5급 | 1 | 행정·시설 1 |
| | | 6급 | 6 | 시설 5, 행정·시설 1 |
| | | 7급 | 12 | 행정 1, 시설 10, 행정·시설 1 |
| | | 8급 | 5 | 행정 3, 시설 2 |
| | | 9급 | 1 | 시설 1 |

[별표 4]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원 | 직 급 별 내 역 |
|------------|-----|----------|------------|---|
| 합 계 | | | 111 | |
| 보건 행정 과 | 일반직 | 계 | 17 | |
| | | 4급 | 1 | 기술 1 |
| | | 5급 | 2 | 의무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
| | | 6급 | 3 | 행정·보건·간호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
| | | 7급 | 3 | 보건 2, 보건·간호 1 |
| | | 8급 | 7 | 행정 2, 보건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간호 3 |
| | | 9급 | 1 | 행정 1 |
| 감염병대응과 | 일반직 | 계 | 19 | |
| | | 5급 | 1 | 행정·보건·의무·간호 1 |
| | | 6급 | 3 | 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
| | | 7급 | 8 | 보건 1, 의료기술 2, 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운전 1 |
| | | 8급 | 6 | 보건 1, 간호 1, 운전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
| | | 9급 | 1 | 운전 1 |
| 건강 증진 과 | 일반직 | 계 | 24 | |
| | | 5급 | 1 |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
| | | 6급 | 9 | 행정 1, 간호 1, 식품위생·간호 1, 의료기술·간호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
| | | 7급 | 7 | 보건 2, 의료기술 1, 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
| | | 8급 | 6 | 의료기술 1, 간호 2, 행정·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
| | | 9급 | 1 | 보건 1 |
| 지역 보건 과 | 일반직 | 계 | 19 | |
| | | 5급 | 2 | 의무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
| | | 6급 | 4 | 보건 1, 보건·간호 1, 행정·보건·간호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
| | | 7급 | 2 | 의료기술 1, 간호 1 |
| | | 8급 | 10 | 간호 9, 보건·간호 1 |
| | | 9급 | 1 | 사회복지 1 |
| 치매 돌봄 과 | 일반직 | 계 | 32 | |
| | | 5급 | 1 | 보건·의료기술·간호 1 |
| | | 6급 | 4 | 사회복지·간호 1, 의료기술·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
| | | 7급 | 4 | 간호 4 |
| | | 8급 | 18 | 사회복지 2, 간호 16 |
| | | 9급 | 5 | 행정 2, 보건 1, 의료기술 2 |

[별표 6]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 원 | 직 급 별 내 역 |
|------------|-----|-----|------------|----------------------------|
| 합 계 | | | 324 | |
| 검 암 경 서 동 | 일반직 | 소계 | 22 | |
| | | 5급 | 1 | 행정 · 공업 · 농업 1 |
| | | 6급 | 3 |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2 |
| | | 7급 | 7 | 행정 3, 사회복지 3, 운전 1 |
| | | 8급 | 7 | 행정 5, 사회복지 2 |
| | | 9급 | 4 |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
| 연 회 동 | 일반직 | 소계 | 22 | |
| | | 5급 | 1 |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
| | | 6급 | 3 |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2 |
| | | 7급 | 7 | 행정 3, 사회복지 3, 운전 1 |
| | | 8급 | 4 | 행정 3, 사회복지 1 |
| | | 9급 | 7 | 행정 3, 사회복지 4 |
| 청 라 1 동 | 일반직 | 소계 | 14 | |
| | | 5급 | 1 | 행정 · 보건 · 환경 1 |
| | | 6급 | 2 |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1 |
| | | 7급 | 6 | 행정 4(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운전 1 |
| | | 8급 | 3 | 행정 3 |
| | | 9급 | 2 | 행정 1, 사회복지 1 |
| 청 라 2 동 | 일반직 | 소계 | 15 | |
| | | 5급 | 1 | 행정 · 녹지 · 시설 1 |
| | | 6급 | 2 | 행정 · 사회복지 1, 행정 · 환경 1 |
| | | 7급 | 2 | 행정 2 |
| | | 8급 | 6 | 행정 4, 사회복지 1, 운전 1 |
| | | 9급 | 4 | 행정 2, 사회복지 2 |
| 청 라 3 동 | 일반직 | 소계 | 12 | |
| | | 5급 | 1 | 행정 · 녹지 1 |
| | | 6급 | 2 |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
| | | 7급 | 3 | 행정 2, 사무운영 1 |

| 구 분 | 직 중 | 직급 | 정원 | 직 급 별 내 역 |
|-----------|-----|----|----|---|
| | | 8급 | 3 |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
| | | 9급 | 3 | 행정 2, 사회복지 1 |
| 가 정 1 동 | 일반직 | 소계 | 19 | |
| | | 5급 | 1 |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
| | | 6급 | 3 | 행정 · 사회복지 2, 행정 · 보건 1 |
| | | 7급 | 5 | 행정 3, 사회복지 2 |
| | | 8급 | 5 | 행정 2, 사회복지 2, 운전 1 |
| | | 9급 | 5 |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3 |
| 가 정 2 동 | 일반직 | 소계 | 10 | |
| | | 5급 | 1 |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
| | | 6급 | 2 | 행정 · 사회복지 1, 행정 · 세무 · 방송통신 1 |
| | | 7급 | 1 | 행정 1 |
| | | 8급 | 4 |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운전 1, 행정 · 사회복지 1 |
| | | 9급 | 2 | 행정 1, 사회복지 1 |
| 가 정 3 동 | 일반직 | 소계 | 10 | |
| | | 5급 | 1 |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1 |
| | | 6급 | 2 |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
| | | 7급 | 1 | 행정 1 |
| | | 8급 | 3 |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
| | | 9급 | 3 | 행정 1, 사회복지 1, 운전 1 |
| 신 현 원 창 동 | 일반직 | 소계 | 20 | |
| | | 5급 | 1 | 행정 · 사회복지 · 공업 1 |
| | | 6급 | 3 |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2 |
| | | 7급 | 7 | 행정 3, 사회복지 3, 운전 1 |
| | | 8급 | 4 | 행정 2, 사회복지 2 |
| | | 9급 | 5 | 행정 2, 사회복지 3 |
| 석 남 1 동 | 일반직 | 소계 | 19 | |
| | | 5급 | 1 | 행정 · 사회복지 · 환경 1 |
| | | 6급 | 3 |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2 |
| | | 7급 | 6 | 행정 2, 사회복지 2, 운전 1, 행정 · 사회복지 1 |
| | | 8급 | 4 | 행정 2, 사회복지 2 |

| 구 분 | 직 중 | 직급 | 정원 | 직 급 별 내 역 |
|---------|-----|----|----|-----------------------------|
| | | 9급 | 5 | 행정 2, 사회복지 3 |
| 석 남 2 동 | 일반직 | 소계 | 11 | |
| | | 5급 | 1 |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
| | | 6급 | 2 | 행정 · 환경 1, 행정 · 사회복지 1 |
| | | 7급 | 3 | 행정 2, 운전 1 |
| | | 8급 | 4 | 행정 1, 사회복지 3 |
| | | 9급 | 1 | 행정 1 |
| 석 남 3 동 | 일반직 | 소계 | 11 | |
| | | 5급 | 1 |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
| | | 6급 | 2 | 행정 · 녹지 1, 행정 · 사회복지 1 |
| | | 7급 | 4 |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
| | | 8급 | 3 | 행정 1, 사회복지 2 |
| | | 9급 | 1 | 행정 1(행정복지) |
| 가 좌 1 동 | 일반직 | 소계 | 12 | |
| | | 5급 | 1 |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1 |
| | | 6급 | 2 | 행정 · 세무 · 공업 1, 행정 · 사회복지 1 |
| | | 7급 | 2 | 행정 1, 운전 1 |
| | | 8급 | 4 | 행정 2, 사회복지 2 |
| | | 9급 | 3 | 행정 2, 사회복지 1 |
| 가 좌 2 동 | 일반직 | 소계 | 15 | |
| | | 5급 | 1 | 행정 · 사회복지 · 방송통신 1 |
| | | 6급 | 2 |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
| | | 7급 | 5 | 행정 3, 사회복지 1, 사무운영 1 |
| | | 8급 | 4 |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
| | | 9급 | 3 | 행정 2, 사회복지 1 |
| 가 좌 3 동 | 일반직 | 소계 | 12 | |
| | | 5급 | 1 | 행정 · 사회복지 · 공업 1 |
| | | 6급 | 2 |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
| | | 7급 | 3 | 행정 2, 운전 1 |
| | | 8급 | 3 | 행정 1, 사회복지 2 |
| | | 9급 | 3 | 행정 2, 사회복지 1 |

| 구 분 | 직 중 | 직급 | 정원 | 직 급 별 내 역 |
|---------|-----|----|----|---|
| 가 좌 4 동 | 일반직 | 소계 | 12 | |
| | | 5급 | 1 | 행정 · 사회복지 · 환경 1 |
| | | 6급 | 2 |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
| | | 7급 | 4 | 행정 3, 운전 1 |
| | | 8급 | 2 | 행정 1, 사회복지 1 |
| | | 9급 | 3 | 행정 1, 사회복지 2 |
| 검 단 동 | 일반직 | 소계 | 21 | |
| | | 5급 | 1 |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1 |
| | | 6급 | 3 | 행정 · 사회복지 2, 행정 · 세무 · 농업 1 |
| | | 7급 | 9 | 행정 3, 사회복지 3, 운전 1, 사무운영 1, 행정 · 사회복지 1 |
| | | 8급 | 3 | 행정 2, 사회복지 1 |
| | | 9급 | 5 | 행정 2, 사회복지 3 |
| 불로대곡동 | 일반직 | 소계 | 16 | |
| | | 5급 | 1 |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
| | | 6급 | 3 | 행정 1, 운전 1, 행정 · 사회복지 1 |
| | | 7급 | 5 | 행정 3, 사회복지 2 |
| | | 8급 | 4 |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
| | | 9급 | 3 | 행정 2, 사회복지 1 |
| 원 당 동 | 일반직 | 소계 | 12 | |
| | | 5급 | 1 | 행정 · 보건 · 시설 1 |
| | | 6급 | 2 | 행정 · 사회복지 1, 행정 · 방송통신 1 |
| | | 7급 | 3 | 행정 2, 운전 1 |
| | | 8급 | 2 | 행정 1, 사회복지 1 |
| | | 9급 | 4 | 행정 1, 사회복지 3 |
| 당 하 동 | 일반직 | 소계 | 12 | |
| | | 5급 | 1 |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
| | | 6급 | 2 |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1 |
| | | 7급 | 3 | 행정 2, 사회복지 1 |
| | | 8급 | 4 |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
| | | 9급 | 2 | 행정 1, 사회복지 1 |
| 오류왕길동 | 일반직 | 소계 | 13 | |

| 구 분 | 직 중 | 직급 | 정원 | 직 급 별 내 역 |
|-------|-----|----|----|--------------------|
| | | 5급 | 1 | 행정·공업·농업 1 |
| | | 6급 | 2 | 행정·보건 1, 행정·사회복지 1 |
| | | 7급 | 4 |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
| | | 8급 | 3 | 행정 1, 사회복지 2 |
| | | 9급 | 3 | 행정 3 |
| 마 전 동 | 일반직 | 소계 | 14 | |
| | | 5급 | 1 | 행정·사회복지·녹지 1 |
| | | 6급 | 2 |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
| | | 7급 | 3 | 행정 2, 사회복지 1 |
| | | 8급 | 4 | 행정 1, 사회복지 3 |
| | | 9급 | 4 | 행정 3, 운전 1 |

인천광역시 서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폐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64호

인천광역시 서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폐지 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폐지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 신고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예규 제1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처리 신고·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지침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처리 신고·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중 “허가 조건”을 “허가·신고 조건”으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조건”을 “허가·신고 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허가”를 “허가·신고”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를 인천광역시 서구가 아닌 곳에서 받은 업체가 인천광역시 서구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2】 사업계획 및 허가신고의 부적정 또는 불승인 처리 요건 (제6조 관련)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고),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수집·운반 제외)의 사업장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시설이 있는 경우
 - 가.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단,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 있는 경우 (단,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누출·유출되지 아니하게 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 중 지하수로, 하수관거는 제외한다)
 - ※ 공공수역: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
 - ※ 수로: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
 - 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허가신고·승인 등을 제한한다.
 -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나. (자연/생산)녹지지역 내 입지하는 경우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 다. 임시보관장소
 - 라. 그 밖에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구청장이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 2020 - 21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2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검단신도시 AB1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심우건설 (대표 이춘석)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2블록
 - 나. 대지면적 : 19,487㎡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63,357.9005㎡ (지하2층, 지상29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4개동 43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162,483,973천원
4. 사업기간 : 2020. 3. 19. ~ 2022. 09. 30.
5. 변경사항(세부내역 붙임 참조)
 - 가. 용적률(연면적) 및 건폐율(건축면적) 변경 등
 - 나. 형별성능관계내역 일부 변경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세부내역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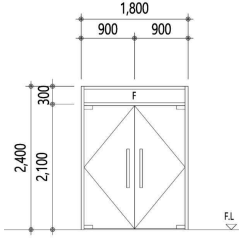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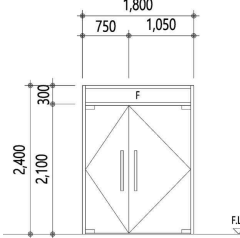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내역 [3차변경]

- 공 사 명 : 검단신도시 AB1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2블록
- 승 인 현 황 : 2019. 12. 0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019-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
2020. 02. 07.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1차변경]
2020. 03. 1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2차변경]
- 변 경 내 역 :

|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증 감 | 비 고 | |
|-------------|---------------------------|---------------------------|---------------------------|-------------------------|-----------------------|
| 1. 대지면적 | 19,487.0000m ² | 19,487.0000m ² | - | | |
| 2. 연면적 | 지상 | 41,840.6001m ² | 41,857.6601m ² | 증 17.0600m ² | 근린생활시설 면적 증가 |
| | 지하 | 21,492.3350m ² | 21,500.2404m ² | 증 7.9054m ² | 세부 실 변경 및 외부 벽체 라인 조정 |
| | 합계 | 63,332.9351m ² | 63,357.9005m ² | 증 24.9654m ² | 세부 실 변경 및 외부 벽체 라인 조정 |
| 3. 용적률산정연면적 | 41,840.6001m ² | 41,857.6601m ² | 증 17.0600m ² | 근린생활시설 면적 증가 | |
| 4. 용적률 | 214.71% | 214.80% | 증 0.09% | 근린생활시설 면적 증가 | |
| 5. 건축면적 | 2,893.4814m ² | 2,907.4646m ² | 증 13.9832m ² | 세부 실 변경 및 외부 벽체 라인 조정 | |
| 6. 건폐율 | 14.85% | 14.92% | 증 0.07% | 세부 실 변경 및 외부 벽체 라인 조정 | |
| 7. 층수 | 지하2층~지상29층 | 지하2층~지상29층 | - | | |
| 8. 세대수 | 437세대 | 437세대 | - | | |
| 9. 주차대수 | 547대 | 547대 | - | | |
| 10. 주택형별 | 59A,B,C, 84A,B | 59A,B,C, 84A,B | - | | |

[건 축]

| 구 분 | | 설 계 변 경 내 용 | | 변경사유 |
|-----|----------------------------|---|---|-----------------------------|
| | | 변경전 | 변경후 | |
| 1 | 용적률 및 건폐율 변경 | -근린생활시설 면적 : 41,840.6001m ² (214.71%) -건축면적 : 2,893.4814m ² (14.85%) | -근린생활시설 면적 증가 : 41,857.6601m ² (214.80%) → 17.0600m ² 면적 증가 -건축면적 증가 : 2,907.4646m ² (14.92%) → 13.9832m ² 면적 증가 | -세부 실 변경 및 외부벽체 라인 조정 |
| 2 | 층별 및 세부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 - | -세부 실에 대한 면적 조정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변경 사항 없음 | -품질 향상 |
| 3 | 형별성능관계내 역 변경 |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일부: F04(비난방) -주민카페 화장실 : F04 | -주민공동시설 유아문고 변경: F02(난방) -주민카페 화장실 : F05 | -품질 및 입주자 편의 향상 |
| 4 | 승강기 인승에 따른 PIT 변경 | -PIT : 2,100mm | -PIT : 2,300mm | -설비 성능 확보 및 품질 향상 |
| 5 | 승강기 PIT 집수정 규격 변경 | -300x300x300mm | -400x400x300mm | -설비 성능 확보 및 품질 향상 |
| 6 | 1201동 제연휨룸 구획 변경 | -지하1층 1201동 제연휨룸 공간 구획 | -공간 구획 삭제 : 상부 급기 부착형으로 변경 | -시공성 및 안전성 확보 |
| 7 | 1203동 제연휨룸 형태 변경 | - | -형태 변경 | -품질 및 입주자 편의 향상 |
| 8 | 우수저수조 및 펌프실 구획 변경 | - | -우수저수조 및 펌프실 구획 변경 | -설비 성능 확보 및 품질 향상 |

| 구 분 | | 설 계 변 경 내 용 | | 변경사유 |
|-----|---|---|--|----------------------|
| | | 변경전 | 변경후 | |
| 9 | 지하1층 용역원실(남) 화장실 위치 이동 | - | -좌측으로 이동 | -품질 및 입주자 사용성 향상 |
| 10 | 경로당 출입문 개폐구성 변경 | -출입문 W:1,800mm (900-900 개폐문 구성)  | -출입문 W:1,800mm (750-1,050 개폐문 구성)  | -품질 및 입주자 편의 향상 |
| 11 | 어린이집 창호 추가 | - | -유희실 창호, 유아용화장실 창호 추가 계획 | -품질 및 입주자 편의 향상 |
| 12 | 주민공동시설 평면 레이아웃 변경 | - | -사무실 추가 -사위실 및 탈의실 구성 변경 -실내골프연습장의 창고, 락카룸 공간 구획 | -품질 및 입주자 편의 향상 |
| 13 | 주민공동시설 층고 일부 변경 (독서실, 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 로비) | -층고 : 4,150mm (토심 : 1,000mm) | -층고 : 4,350mm (토심 : 800mm으로 축소) | -설비 성능 확보 및 품질 향상 |
| 14 | 주민공동시설 승강기 규격 변경 | -내부 : 2,450x2,350mm O.H : 4,400mm | -내부 : 2,600x2,350mm O.H : 4,750mm | -설비 성능 확보 및 품질 향상 |
| 15 | 근린생활시설 일부 계획 변경 | -2층 복도 : 난간 계획(외부) -13호, 14호실 : 분리 -6호, 9호, 12호실 문 위치 : 좌측 | -THK5 단창으로 수정(내부) -13, 14호실 : 통합 -6호, 9호, 12호실 문 위치 : 우측 이동 | -품질 및 입주자 편의 향상 |
| 16 | 근린생활시설 냉매배관 샤프트 계획 | - | -냉매배관 샤프트 설치 | -설비 성능 확보 및 품질 향상 |
| 17 | 근린생활시설 선흡통 및 드레인 추가 | -1개소 | -3개소 (2개소 추가) | -품질 및 입주자 편의 향상 |

| 구 분 | | 설 계 변 경 내 용 | | 변경사유 |
|-----|-----------------------------|---|---|------------------|
| | | 변경전 | 변경후 | |
| 18 | 형별성능내역 오기 수정 및 추가 | -D05 : 통기량 0.89m ³ /(h·m ²) -D06 : 없음 (주민공동시설) -G05 : 없음 (경비실) | -통기량 0.57m ³ /(h·m ²) -D06 : 일반문 타입 추가 -G05 : 미서기창 타입 추가 | -단열성능 및 품질 향상 |
| 19 | 주민공동시설 창호 표기 및 노트란 추가 | -창호 내역 표기 없음 | -SD 창호 추가 | -단열성능 및 품질 향상 |
| 20 | 점자블럭 및 핸드레일 추가 설치 | - | -점자블럭 및 핸드레일 (손잡이 점자표지판) 추가 설치 | -입주자 편의 향상 |
| 21 | 장애인주차 통로 구획 변경 | - | -장애인주차 통로 구획 변경 | -입주자 편의 향상 |
| 22 |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개폐방식 변경 | -화장실 출입문 : 일방향 도어 | -스윙도어로 변경 | -입주자 편의 향상 |
| 23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 구성 변경 | -일반주차 : 6대 | -일반주차 : 5대 -장애인주차 : 1대 | -입주자 편의 향상 |
| 24 | 근린생활시설 2층 화장실 구성 변경 | -일반 소변기 : 2개소 | -일반 소변기 : 1개소 -장애인 소변기 : 1개소 | -입주자 편의 향상 |

[구 조]

| 구 분 | | 설 계 변 경 내 용 | | 변경사유 |
|-----|-------------------|---|--|--------------------|
| | | 변경전 | 변경후 | |
| 1 | 지하주차장 구조 일부 변경 | -지하주차장 PC구조 영역 -지하주차장 RC구조 영역 | -RC구조 영역으로 일부 변경 -PC구조 영역으로 일부 변경 (슬래브, 벽체 및 보 배근, 규격 변경) | -시공성 향상 및 품질 향상 |
| 2 | 우수저수조 및 펌프실 구획 변경 | - | -우수저수조 및 펌프실 콘크리트 구조로 변경 (관련 주변부 슬래브, 벽체 부호 및 배근, 규격 변경) | -설계보완 및 품질, 시공성 향상 |
| 3 | 지하주차장 파일 개수 추가 변경 | -1201동 : 162본 -1202동 : 183본 -1203동 : 192본 -1204동 : 178본 -지하주차장 : 551본 | -1201동 : 162본 (변경없음) -1202동 : 183본 (변경없음) -1203동 : 193본 (1본 추가) -1204동 : 178본 (변경없음) -지하주차장 : 556본 (5본 추가) | -설계보완 및 품질, 시공성 향상 |
| 4 | 주민공동시설 층고 일부 변경 | -층고 : 4,150mm (토심 : 1,000mm) | -층고 : 4,350mm (토심 : 800mm으로 축소) | -설비 성능 확보 및 품질 향상 |
| 5 | 단위세대 기초 두께 변경 | -기초 두께 600mm | -기초 두께 1,100mm | -품질 및 시공성 향상 |

[토 목]

| 구 분 | | 설 계 변 경 내 용 | | 변경사유 |
|-----|-------------------|-------------------------|--|-------------------------------------|
| | | 변경전 | 변경후 | |
| 1 | 선근화계 및 토목 옹벽 변경 | - | -선근 화계 크기 및 토목 옹벽 선형 정리 | -품질 및 시공성 향상 -입주자 사용성 향상 |
| 2 | 우수 집수정 및 연결관 변경계획 | -흙통받이 -연결관 변경 : D200 | -우수조 집수정(300x400) 으로 변경 -연결관 D250으로 변경 계획 | -각 동별 지하우수조 연결에 따른 밀폐집수정과 연결관 관경 변경 |
| 3 | 오수 집수정 및 연결관 변경계획 | - | -오수 집수정 및 연결관 삭제 및 추가 변경계획 | -상세설계에 따른 기계설비 반영한 오수 계획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22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4 외 16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 도 로 명 고 시 일 | 도 로 명 부 여 사 유 |
|------|-------|----------------------|----------------|------------------|
| | | 별 도 열 램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12.2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0-12-21

| 연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113-13 |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4 (검암동) | 20101228 | 국도해양부 노선명을 이용하여 명명함 | |
| 2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44 | 인천광역시 서구 목항로 219 (원창동) | 20090922 | 인천의 대표적 향구인 목항을 지나는 도로 | |
| 3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61-8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53 (심곡동) | 20090922 |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입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 |
| 4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96-8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7 (심곡동) | 20090922 | 심곡동의 동명을 따서 명명 | |
| 5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14 |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93 (청라동) | 20101111 |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 |
| 6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08-8 | 인천광역시 서구 파랗로 412 (원창동) | 20090922 | 옛날 청라도가 파랗으로 불려, 이 명칭을 따 파랗으로 명명 | |
| 7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23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60 (가정동) | 20090710 | 봉오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8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22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60-1 (가정동) | 20090710 | 봉오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9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2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58 (가정동) | 20090710 | 봉오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0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6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50 (가정동) | 20090710 | 봉오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1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17-9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47 (가정동) | 20090710 | 봉오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2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6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46 (가정동) | 20090710 | 봉오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3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3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안길 30 (가정동) | 20090710 | 봉오대로25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도로 | |
| 14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26 | 인천광역시 서구 목항로32번길 29-21 (원창동) | 20131202 | 목항로 시작지점에서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5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16-1 |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81번길 33-2 (오류동) | 20200720 | 반월로 서점에서 810미터 지점에서 분기한 도로 | |
| 16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9-31 |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나스로194번길 24 (청라동) | 20201012 |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0-12-21

| 연번 | 도로명주소 | 폐지사유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63 (가좌동) | 건축물대장 말소 | 20090922 | 가정동의 동영을 담. 가정동미란 영청은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와서 佳亭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 19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결과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의거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에 따른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거리명 | 위 치 | 규모 | 결과 |
|----------|--------------|---|----|
| 루원음식문화거리 | 봉오재3로94번길 일원 | - 대표거리길이 : 250m - 총 면적: 약 30,000m ² | 지정 |

* 대표거리 : 해당 음식문화거리를 대표하는 장소

* 총 면적 : 대표거리 주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주변도로를 포함한면적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1964호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0. 12.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119-22, 229-12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석남완충녹지 도시바람길숲 조성공사에 편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 후 안치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인천가족공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5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9. 신 고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032-560-449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공사 중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같음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 19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직무관련사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조항을 정비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단어, 띄어쓰기 등을 바로 잡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무관련사건 대상자를 전출 및 퇴직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

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규정(안 제2조)

- 인감증명서 요구 조항을 신분증 사본으로 변경(안 제22조)
- 종전의 ‘조속히’, ‘강구’, ‘규명하여’ 등은 한자어이므로 이를 한글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련’, ‘밝혀’ 등으로 정비함 (안 제15조, 제20조, 제24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32-560-4064,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를 각각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이”를 “공무원(전출 및 퇴직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원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조 앞의 “제2장 소송의 제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증빙서류

제7조제1항 중 “소송제기 결정시”를 “제소·응소 등의 소송수행 결정 시”로,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 2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를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송위임 또는 수행자지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임장을 교부하거나 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위임장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위임장
3. 소송수행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8조제1항제6호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진행중”을 “진행 중”으로 한다.

2. 공판 기일 입회보고(별지 제7호서식)

제9조제1항 단서 중 “소속공무원중”을 “소속공무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취”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피소사건의 응소”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의 “제4장 소송결과의 조치”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소송결과의 조치

제15조제2항 중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판결문 송달이전에 정지결정을 득하도록 조치 하여야”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급부판결”을 “이행판결”로, “취하여야”를 “뱉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건중”을 “사건 중”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판결전”을 “판결 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을 “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배상금 임의변제”를 “임의변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간은 판결확정증명서”를 “사건은 판결 확정증명서”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24조제1항 중 “규명하여”를 “밝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중”을 “수행 중”으로, “지정된자”를 “지정된 자”로 한다.

제26조 앞의 “제5장 직무관련사건”을 삭제한다.

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무관련사건

제26조제1항 전단 중 “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등”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 송 위 임 장

사 건 : 법원 호 「 」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권한을 수여합니다.

수 임 인 : 변호사 ○○○○

주소

연락처

1. 위 사건의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공탁 또는 공탁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2.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 2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

년 월 일

위임인 : 피 고 인천광역시 서구 (인)

(☎)

○○○○법원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사 건 : 법원 호 「 」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 위임을 합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대리인 : ○○○○ (소속 : 인천 서구청 ○○과)

주소

연락처

나. 신청이유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왔음.

2. 위임 사항

가. 위 사건의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공탁 또는 공탁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나.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 2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

년 월 일

위임인 : 피 고 인천광역시 서구 (인)

(☎)

○○○○법원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

사 건 : 법원 호 「 」
 원 고 :
 피 고 :

위 소송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
 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과 ○○○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합니다.

(☎)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법원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지 명 장

소 속 :

직 명 :

성 명 :

귀 직은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의 규정된 직무를 성실히 이행
할 것을 명하여 아래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합니다.

사 건 : 법원 호 「 」
사 원 고 :
피 고 고 :

20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소직은 아래의 소송 사건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의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 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 건 : 법원 호 「 」

원 고 :

피 고 :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명
 성 명 (서명/인)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공 판 기 일 입 회 보 고

| | | | | |
|--------------------|------|---------|--------------|------|
| 사건번호 | 법원 | 호 | 사 건 명 | |
| 원 고 | | | 피 고 | |
| 수행부서 | 과 | 팀 | 소 송 수 행 자 | |
| 변론기일 | | | 다음기일 | |
| 소 송 진 행 상 황 | | | | |
| 구 분 | 출석여부 | 주 장 사 항 | | 입증방법 |
| 원 고 | | | | |
| 피 고 | | | | |
| 재 판 부 지시사항 | | | | |
| 차기진행 예정사항 | | | | |
| 소송수행자 의 견 | | | | |
| 첨 부 | | | | |

[별지 제8호서식]

임 의 변 제 청 구 서

| | | |
|----------------|------|------|
| 청 구 인 (원 고)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위청구인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원고 _____,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 간의 _____ 법원 _____ 호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 구분 당사자명 | 지방법원 | 고등법원 | 청 구 금 액 | | | |
|------------|------|------|---------|-----|-----|-----|
| | 원고명 | 인용액 | 인용액 | 원 금 | 이 자 | 합 계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서 1부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

[별지 제10호서식]

확 약 서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는 직무관련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의 법률지원에 동의하며,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일체를 즉시 인천광역시 서구에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중

[별지 제11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피 고 인 :

(피 의 자)

사건번호 :

사 건 명 :

위 사건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는 변호사 ○○○

(주소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선임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법원 귀중

<별지>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 (서명/인)

주 소 :

관 계 :

2. 성 명 : (서명/인)

주 소 :

관 계 :

3. 성 명 : (서명/인)

주 소 :

관 계 :

4. 성 명 : (서명/인)

주 소 :

관 계 :

5. 성 명 : (서명/인)

주 소 :

관 계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제1장 총 칙</u> | <u>제1장 총칙</u>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과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행 절차와 업무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5.10.30.] | 제1조(목적) ----- ----- 포 <u>합한다</u> ----- ----- ----- -----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 1. “소송”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 1. ----- ----- ----- <u>한다</u> ----- ----- ----- <u>한다</u> ----- ----- ----- -----. |
| 2. ~ 4. (생략) | 2. ~ 4. (현행과 같음) |
| 5. “직무관련사건”이란 구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u>공무원이</u> 당사 | 5. ----- ----- ----- <u>공무원(전출 및</u> |

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전문 개정 2015.10.30.]

제2장 소송의 제기

제5조(소송제기의 요청)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증빙서류 각4부
- 6. (생략)
- ② (생략)

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구청장은 소송제기 결정시 소송 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 2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③ (생략)
- ④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

<삭 제>

제5조(소송제기의 요청)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 5. 증빙서류
-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
--- 제소·응소 등의 소송수행 결정시 --- 공무원 중-----
----- 지정--

-----.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소송위임 또는 수행자지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임장을 교부하거나 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8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 대리인 및 소송 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6. 제9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송 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 담당자의 직무
-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 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지정된 공판 기일의 보고
 - 3. 소송 진행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 4. ~ 6. (생략)

1.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위임장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위임장

3. 소송수행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 6. ----- 단서-----

- ② -----

-----.
- 1. (현행과 같음)
- 2. 공판 기일 입회보고(별지 제7호서식)
- 3. --- 진행 중 -----

- 4. ~ 6. (현행과 같음)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판결문 송달이전에 정지결정을 득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16조(판결문)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자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글 부판결 등에 있어서 구가 승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패소 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중 그 원인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

일 내에 결정하여야 -----

-----.

제16조(판결문)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이행판결 -----

----- 밟아야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

----- 마련 -----
-----.

② ----- 사건 중 -----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각서(별지 제9호서식)

<신 설>

제24조(소송결과에 대한 징계 조치)

① 소송 주관 실·과장은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 수행중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 포함)로 지정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장 직무관련사건

<신 설>

제26조(수행절차) ① 직무관련사건 업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삭 제>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24조(소송결과에 대한 징계 조치)

① -----
----- 밝혀 -----

-----.

② ----- 수행 중 -----
----- 지정된 자-----

-----.

<삭 제>

제3장 직무관련사건

제26조(수행절차) ① -----

무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한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약속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8조(비용회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일체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해당 공무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금액은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10.30.]

----- 공무원등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비용회수 등) ① -----

----- 공무원등 -----

1. 2. (현행과 같음)

② ----- 공무원등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 1997호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률 고문의 자문료를 증액하여 자문료를 현실화하고 자문서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적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별표] 소송비용 및 보수지급기준의 법률자문료를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32-560-4064,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송비용 및 보수지급기준(제4조 관련)

| 구 분 | 지 급 기 준 | | 승 소 사 례 금 |
|-------|---|-------------------------------|--|
| | 내 용 | 착 수 금 | |
| 신청사건 | 변론이 없는 경우 | 200,000원 | 없 음 |
| | 변론이 있는 경우 | 400,000원 | |
| 소송사건 | 2천만원미만 및 무소가사건 | 700,000원 | 1. 전부 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 승소 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퍼센트 |
| |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1,000,000원 | |
| |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1,500,000원 | |
| |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 2,000,000원 | |
| | 1억원이상 2억원미만 | 2,500,000원 | |
| | 2억원이상 3억원미만 | 3,000,000원 | |
| | 3억원이상 4억원미만 | 3,500,000원 | |
| | 4억원이상 5억원미만 | 4,000,000원 | |
| | 5억원이상 | 4,500,000원 | |
| | 상소심 | 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 | |
| | 환송사건 | 본안소송 착수금의 1/2이내 | |
| 형사사건 | 개인단독사건 | 2,000,000원 | 변호인의 특별한 노력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건 종결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착수금의 한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특별보수지급 |
| | 다수관련사건 | 3,000,000원 | |
| |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 4,000,000원 | |
| 기 타 | 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검 증 비 4. 감 정 료 5. 기타비용 |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 |
| 법률자문료 | 구 분 | 지 급 기 준 | 비 고 |
| | 자문료 | 건당 20만원 | 자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 자문회의 | 1시간 기준 회당 10만원 (30분 미만 절사) | 법률고문 운영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함 |

1. 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본다.
2. 착수금은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그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3. 수당,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확정판결 시에만 지급한다.
5. 직무관련사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지급기준에 따른다.